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범죄의 양상과 대책**  
**: 동북아 금융허브의 안착을 위하여**

A Study on Foreign Exchange Crime and Countermeasure  
in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For the Secure  
Establishment of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범죄의 양상과 대책  
: 동북아 금융허브의 안착을 위하여**

A Study on Foreign Exchange Crime and Countermeasure  
in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For the Secure  
Establishment of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 【요 약】

최근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financial hub) 육성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hub & spokes)가 구축되고는 있으나,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에 수반하여 여러 탈법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자본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환투기 가능성이나, 탈법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단속실적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및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사범이 향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환범죄 대책을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IMCRS)에 따라 모색하였는 바, 그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도 설계 단계 특히 조직화 측면에서 전문수사부서 확보, 제도 집행 단계에서 범죄대응절차로서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외환범죄 분석 및 대응방안 구상을 계기로 향후 FTA 시대, 자본자유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국제범죄, 경제범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환범죄, 자본자유화, 동북아 금융허브,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I. 자본자유화의 현황	4
1. 자본자유화 추이	4
2. 금융허브 구축의 가속화와 탈법위험	12
III. 외환거래제도의 구조	19
1. 법규체계	19
2. 관련기관	22
IV. 외환범죄의 실태	24
1. 외환거래사범의 개관	24
2. 외환거래사범의 유형별 현황	26
3. 외환거래사범의 검거 및 수사사례분석	39
V. 외환범죄의 전망과 대책	45
1. 외환범죄의 전망	45
2. 외환범죄의 대책	46

VI. 결 론 .....	52
참고문헌 .....	54
ABSTRACT .....	56
<b>&lt;부 록&gt;</b>	
1. 주요 단속유형별 적발사례 .....	58
2. 외국환거래법 .....	83

## 표 목 차

<표 2-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자유화 추진경과 .....	11
<표 2-2> 2006년 중 외환자유화 조치사항 .....	15
<표 4-1> 외환거래사범 단속실적(총괄) .....	24
<표 4-2> 순수외환사범 단속실적 .....	27
<표 4-3> 재산국외도피사범 단속실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위반) ·	29
<표 4-4> 자금세탁사범 단속실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1
<표 4-5> 대상국별 불법외환거래사범 .....	34
<표 4-6> 지역별 불법외환거래사범 .....	37

## 그 림 목 차

<그림 2-1>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 .....	16
<그림 3-1> 외환거래법규체계 .....	21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시장 개방압력 증대와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국제화의 필요성 대두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자본유입 증대와 경상수지 악화 등 국제수지 면에서 새로운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본자유화는 저리의 외자유입에 따른 국내금리하락 및 투자증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조달 및 투자기회확대, 경쟁촉진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본유입은 환율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해외부문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과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상승,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 및 산업의 잠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의 자본유입은 종래의 부족자본 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소 과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직접투자 등 생산활동의 연계성이 큰 자본에 비하여 증권투자 및 단기성 자본의 유입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급격한 자본유출은 주가폭락,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융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본자유화는 외환위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귀결되었다. 그 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면서 금융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 정부는 또 다시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2002-2011)을 계획하였다. 더 나아가 2006년 정부는 당초 2011년으로 되어 있던 자유화일정을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hub & spokes) 구축이 보장되는 반면에, 외환거래제도변화와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에 수반하여 여러 탈법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일부 무역업체 및 시민들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영수하거나 일정 거래액 초과 지급수단을 신고없이 휴대반출입하여 세관에 단속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외환거래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외환사범들은 범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외환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이 외환거래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인적·물적 피해와 탈법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단속기관에서도 외환거래관련 제도와 범죄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외환사범 양산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진현황과 자본자유화 수준, 자본자유화에 수반된 외환거래에서의 탈법위험을 살펴보고, 현행 외환제도의 구조와 외환범죄의 유형을 개관해 본 후 외환범죄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자본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제도와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 외환거래의 법질서를 벗어난 외환범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외환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함축한 제

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적 접근 시각을 기초로 하면서 외환관련 법제 및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처방적 (prescriptive) 내지 정책지향적 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외환범죄 연구범위는 우리나라의 주로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조치와 2004년 이후 발생한 외환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자본자유화의 현황으로서 자본자유화 추이와 금융허브 가속화 속의 탈법위험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외환제도의 구조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기관 등을 일별해본다. 이어 IV장에서는 외환범죄의 실태를 개관하고 그 유형별로 순수외환사범, 재산해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을 분석한 뒤, 외환거래범죄의 주요 검거사례 및 수사사례를 살펴본다. V장 전망과 대책에서는 외환범죄의 향후 전망과 이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II. 자본자유화의 현황

### 1. 자본자유화 추이

資本自由化(liber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란 원칙적으로 자본의 사용목적이나 이동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나 간섭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국가간에 자유로운 資本移動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상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장단기 차관 등 국가간 모든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포함된다.<sup>1)</sup>

유럽 여러 나라는 1960년대에 국가간 통화의 교환성회복을 계기로 대폭적인 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유럽보다도 앞서서 이미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본자유화는 실물경제 부문 즉 무역의 자유화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의 국제적인 유지는 각국의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그간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외환관련 법령을 외국환관리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철저한 외환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한국에서는 외자도입법<sup>2)</sup> 및 외국환관리법<sup>3)</sup>으로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

1) 자본자유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국별 금융상품간에 一物一價의 법칙과 완전한 代替性(perfect substitutability)이 성립하게 된다 (Obstfeld, 1993). 자본이동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서로 동일해야 하는 한편, 이러한 금융제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동시에, 外換市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남중현·설동규, 1996).

2) 외자도입법은 국민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3.12.31. 법률 3691호)이다. 1966년 8월 법률 제1802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3년 전문 개정하면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자관리법'을 폐지하고 이들 두 법률의 내용을 흡수하였다.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국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외자도입법에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승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외국인 투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였으며,

한하여왔으나, 무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라 외국환거래법<sup>4)</sup> 등을 통해 점차로 규제의 수준을 완화해가는 추세를 보였으며, 또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와 차관 도입은 선별적으로 허용되었다.

외환통제는 제1차 오일쇼크 등에 따른 큰 폭의 국제수지 적자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도입 필요성을 배경으로 1970년대 전반까지 이어졌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 추세가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사정도 호전됨됨으로써 수입자유화조치의 단계적 확대 시행, 해외여행경비 지급한도 확대 등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무역규모 확대,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와 규제 완화가 반복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전용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증권투자를 허용하여 국내자본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등 자본유입은 자유화되었으나 자본유출은 계속 규제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어 외화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유입이 다시 규제된 반면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으며 1988년에는 경상거래

그 출자, 기업의 등록, 배당금 등의 송금, 출자금의 회수, 외자 등의 처분제한과 조세의 감면, 기타 특전을 보장하였다. 그 밖에 차관계약·기술도입계약 및 공공차관계약,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총칙, 외국인 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공공차관계약, 지급보증, 보칙, 별칙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외자도입법은 1997년 1월 13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3)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전문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47호)이었으며, 외국환거래법(제정 1998. 9. 16 법률 제5550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 4) 현재의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를 완전자유화하고 IMF 제8조국<sup>5)</sup>으로 이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원화강세 및 세계경제의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자 정부는 다시 거주자의 외환매입과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였고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9월에는 경상거래 대한 규제를 종전 원칙규제 예외허용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 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였다. 이어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이 자유화되면서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과거처럼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대신 거주자의 해외 *portfolio*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OECD가입을 앞두고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1995년 2월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 1996년 6월에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설치와 업무를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면서도 우리나라는 OECD자본자유화규약의 상당부분 특히 장기자본 유입과 관련된 부분은 그 시행을 유보하였다.(이종덕·박경훈, 2005. 12)

이상의 자본자유화 추이를 부문별로 보면 우선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식시장에 대한 간접투자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허용한 후 1990년대에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와 채권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부문을 보면 1984년에 positive system에서

5) IMF 협정 제 8 조 의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수락한 국가를 말하며 IMF 8조국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IMF 협정8조 4항).

- ① 가맹국은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 등 국제적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이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방해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IMF 협정 8조 2항).
- ② 가맹국은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국이나 외국환 종류에 따른 차별적 조치와 이중환율제도, 외국환거래세제도 등에 의한 복수통화조치를 취할 수 없다(IMF 협정 8조 3항).
- ③ 가맹국의 통화당국은 다른 가맹국 통화당국이 경상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국통화를 SDR 또는 교환성 있는 통화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할 때에 이에 무제한 응해야 한다.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고 1992년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허가를 외국 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였으며 투자업종제한은 매년 지속적으로 완화해오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우 1981년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발행을 허용한데 이어 Korea Fund, Korea Europe Fund, Korea Asia Fund 등의 Country Fund의 설립을 각각 1984, 1987, 1991년에 허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투자신탁회사의 혼합형 수익증권(matching fund)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간접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어서 1992년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개방을 본격화한 후 동 허용폭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오고 있다.<sup>6)</sup>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1994년 7월에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와 저리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를 허용한 후 1995년에는 투신사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1996년 9월에는 Korea Bond Fund(1억 미달러)를 런던시장에 상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투자와 국내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였다. 또 금년 6월 2일부터는 당초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였다. 한편 1985년에 처음으로 허용한 국내기업의 주식연계 해외증권(CB, BW, DR 등) 발행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DR의 해외시장 상장을 허용한 데 이어서 1997년 1월 1일 연간발행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차관의 경우에는 1996년 10월에 중소기업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도입을 자유화한 데 이어 1997년 1월 1일부터 첨단기술대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과 SOC 민자유치 제1종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국내공사비 조달용 현금차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5년이상 시설재 도입용

6) 1992년 1월 외국인 직접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할 때 각각 3%와 10%였던 종목별 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와 전체취득한도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서 1997년 5월 2일부터는 각각 6%와 23%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5월 외국인의 주식취득은 완전히 개방됐다.

장기차관을 허용하였다.

또한 무역신용의 확대를 위해 1996년 10월에 延支給 수입기간을 중소기업은 120일에서 150일로, 대기업은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연장한 데 이어서 1997년 1월1일 부터는 수출용원자재수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시 180일로 연장하였다. 수출선수금의 한도도 1996년에 전년도 수출실적의 15%에서 20%로 확대한데 이어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25%로 상향조정하였다 (오정근, 1997. 7).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자유화되었다. 1998년 7월에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이 자유화되었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었다.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998년 9월에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하였다. 또 1999년 4월 1일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조치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개편되었으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2001년 1월 1일 시행된 제2단계 자유화조치에서는 제 1단계 자유화조치에서 유보되었던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의 한도 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다만 대내외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자유화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는 당분간 계속유지하고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제한 채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 차입거래 제한 등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는 2005년 말

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에는 1,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남아있는 외환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금융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3단계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표 2-1>.

그 1단계 조치로서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 전면 자유화되고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참여 허용, 원화수출자유화 등의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아울러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0억원, 원화대출한도가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한편 거주자의 해외차입한도도 천만불로 확대되었다.

제2단계인 2006년 1월부터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 등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유화되기로 계획되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자금증빙서류 제출의무폐지,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의 신고제 전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철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 등도 2단계 기간 중 계획되었다.

2009년으로 예정된 3단계에 들어서면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하여, ①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제도 ② 외국환평형기금 관련규정 ③ 평상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sup>7)</sup> ④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등만을 규정하고 외환제도 자유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건전성 감독 등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의 각 권역별 법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하되 유사시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동 내용을 Safeguard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인당 1만불

7) 비거주자 원화funding,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를 신고제로 전환

---

로 제한되어 있는 원화수출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2-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자유화 추진경과

자유화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외환자유화 ('9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관련 외환자유화</li> <li>· 기업 외화차입 및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등 제한 완화</li> <li>· 자본거래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li> <li>·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허가제, 외환집중제 등</li> </ul> </li> </ul>
2단계 외환자유화 ('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외화송금거래 등 잔존 외환규제 자유화</li> <li>·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증여성송금 등의 지급한도 폐지, 단. 고액 대외지급은 한은 신고</li> </ul>
외환제도 증장기 발전방향 ( '02.4.20)	제1단계 ('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 기본 틀 유지 및 절차적 제한 완화</li> <li>· 자본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액 대외지급관련 한은신고제도 폐지('02.7월)</li> <li>-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 확대</li> <li>-거주자의 해외차입, 외화증권발행 한도(3천만불) 상향 조정</li> </ul> </li> <li>· 무역거래관련 다자간 포괄상계 허용 등 결제방법 간소화</li> </ul>
	제2단계 ('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대폭 축소</li> <li>· 허가제 폐지 및 신고(수리)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 등</li> </ul> </li> <li>·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li> <li>·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li> <li>· 지정거래은행제 폐지 및 외국환은행의 자본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면제 등</li> </ul>
	제3단계 ('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li> <li>·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폐지</li> <li>·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는 신고제 유지</li> </ul> </li> <li>·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폐지</li> </ul>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2005. 6. 3.

## 2. 금융허브 구축의 가속화와 탈법위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자유화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허브 구축을 겨냥한 최근까지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2005년 59.4%에서 허가제가 폐지되는 2006년에는 85.1%로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종덕·박경훈, 2005. 12).

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보고서<sup>8)</sup>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본자유화의 수준을 평가해본 결과 허가제 폐지 이전인 2005년 현재까지만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아주 낮은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에 크게 모자라며 신흥시장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9개 회원국들의 평균 자본자유화 수준은 89.3%이며, 미국이 95%로 선두이고 그 다음은 일본(86.1%), 독일(89.1%), 영국(86.1%) 순이다. 또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흥시장국들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평균 84.2%다.<sup>9)</sup>

또 91개 항목을 자유화 후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 53개 항목과 경제여건에 따라 재유보가 가능한 B리스트 38개 항목으로 구분해 측정된 결과 우리나라는 B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34.1%로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 항목 76.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단기자금시장거래, 파생금융거래, 대

8) 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보고서는 OECD의 자본자유화규약의 91개 항목별로 규제유형을 기술하고 있어서 자본자유화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OECD 자본자유화규약은 대분류 16개, 중분류 47개, 소분류 9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화 후 재유보 가능 여부에 따라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와 경제여건에 따라 재유보가 가능한 B리스트로 구분된다. 회원국들의 자본자유화규약 이행상황은 원칙적으로 동류평가(peer review)를 통해 점검되며 회원국들은 경제여건상 이행하기 힘든 부분은 유보(reservation) 또는 적용면제(deroga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자본자유화수준 조사는 2002년 OECD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CMIT)의 자본자유화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91개 각 항목에 대해 자유화 유보 조항이 있으면 O, 유보조항이 없으면 1을 배정하는 on/off 방식으로 측정했다.

출 및 차입, 외환매매거래 등 주요 규제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볼 때 단기자금시장 거래(41.7%), 기타 증권과 비증권권리 거래<sup>10)</sup>(8.3%), 금융상 신용<sup>11)</sup>(0%), 외환매매 거래(50%)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특히 낮은 상태다. 이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파생금융거래와 외국인의 원화차입 및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파생금융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아 외환시장 교란위험이 높아 규제대상이다. 외국인의 원화차입이나 대출은 헤지펀드의 환투기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10억원과 1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의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A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81.7%, B리스트 자유화수준이 90.2%, 전체 자유화 수준이 85.1%로 올해에 비해 급상승한다. 부문별로는 단기자금시장거래가 2005년 41.7%에서 2006년엔 91.7%의 자유화 수준에 크게 상승하고, 2005년 8.3%에 불과한 파생금융거래, 0.0%인 대출 및 차입은 모두 100% 자유화되어 신흥시장국의 자유화 수준을 상회 급상승할 전망이다.

외환거래 허가제가 폐지되면 외환제도상 남은 규제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정거래은행제도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뿐이며 이마저도 2011년까지 모두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 하에 추진되던 외환자유화는, 2006년 6월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선진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구상에 따라 상기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2011년 완료→2009년 완료)하기로 하였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 5. 19). 2009년까지 완료키로 조정된 외환자유화는 2006년부터 2단계로 추진되며(1단계 : 2006~2007년, 2단계 : 2008~2009년), 그 주요내

10) 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

11) 대출 및 차입

용으로는 ① 원화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 ②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③ 외환시장의 선진화 등이다.

여기서 발표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원화 국제화의 경우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제도를 확대(10억원→100억원)하여 외국인의 원화보유를 확대하고, 해외 선물거래소(시카고)에 원/달러 통화선물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며(25%→14%), 원화 수출입 한도를 상향조정(1만불→100만불)하고 1단계(2006-2007년)중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 ②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내용으로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일반기업 및 개인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고, 대외채권회수의무는 단계적으로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단계(2008-2009년)중 폐지하며,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외환시장의 선진화의 경우 외국환 포지션한도완화 등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촉진하고,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을 통한 외환시장을 활성화하며, 외환시장 거래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화차입 한도확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고,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시카고) 원/달러 선물상품 상장<sup>12)</sup> 추진 등 기타과제들은 이번 자유화 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표2-2>.

12) 시카고 선물거래소(CME)에는 17개 통화의 선물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선진국 통화 범주에는 유로,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포괄되어 있다. 기타 멕시코,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통화도 거래되고 있다. 이중 개도국으로서는 멕시코 페소화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CME 상장을 계기로 페소화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되고 멕시코 투자에 대한 위험 관리 수단이 확보되어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된 것으로 CME측은 평가하고 있다.

<표 2-2> 2006년 중 외환자유화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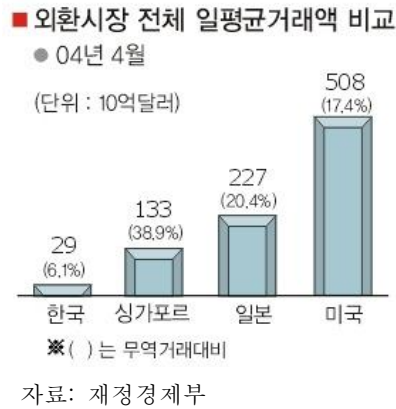
	즉시 시행과제	하반기 시행과제
원화국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차입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은 신고한도를 현행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조정</li> </ul> </li> <li>○ 원화 수출입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은 허가한도를 현행 1만불 → 100만불로 상향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카고 선물거래소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달러 선물상품의 해외 상장을 추진</li> </ul> </li> <li>○ 비거주자 원화채권 투자 활성화 (세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 원천세율 인하 (25% → 14%)</li> <li>-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운영</li> </ul> </li> </ul>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불 한도내에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시설대여업자등의 외화대출 업무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대출 금액제한 폐지</li> </ul> </li> </ul>	
외환시장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국내선물거래시 위탁(매매)증거금의 외화납부를 허용</li> </ul> </li> <li>○ 외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 5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sup>1)</sup>과 협의하여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시행</li> </ul> </li> </ul>

주: 1) 서울외환시장 참여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기구로서 그 구성회원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등이다.

자료: 재정경제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 5. 19.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우선 기업들의 채용조달창구가 다양화되고 자본코스트가 낮아질 뿐 아니라 해외직접 또는 간접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외국자본의 진출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금리·환율 등의 가격변수 결정구조가 선진화되고 금융·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나아가 전세계적 규모에서 자원배분이 최적화되고 위험이 분산됨으로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그림 2-1>에서 보듯이 2004년 4월 현재 규모면에서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서울신문, 2006. 5. 19), 정부가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뒤떨어진 한국의 외환시장규모도 급성장할 것이며 그로 인한 외환시장의 질적 발전과 구조변화, 경제적 성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情報의 非對稱性(information asymmetry)<sup>13)</sup>으로

13)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 있어 위임자·대리인 양측이 갖는 정보가 같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위임자와 대리인은 각각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반드시 자원의 최적배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 기초경제여건의 안정, 건전한 금융제도, 시장기능의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자본의 자유화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지배 및 시착잠식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수지를 교란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는 국제자본시장 접근기회확대에 따른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급상승함에 따라 외환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함께 그로 인한 환투기 가능성과 시장불안, 탈법위험 등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중에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는 당장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유층의 외환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수요(거주용)가 아니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이 투자목적용 자유롭게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투자한도는 내년까지 100만 달러로 하되 3년 내에 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 초 이미 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취득 금액과 통합한 한도이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100만달러씩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가 한층 자유로워져 국내 부동산 투자 환경이 나빠질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도 해외 여행

---

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대리인이 위임자보다 특정한 과업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비 지출, 유학·연수비 지출, 해외 이주비와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는 지나친 외환국외 유출 사태와 탈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도 향후 자본자유화와 외환시장 거래규모 확대에 편승하여 더욱 다양한 수법의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불안과 환투기뿐만 아니라 특히 자본자유화 조류 속에 느슨한 외환제도를 악용한 외환범죄를 모니터링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Ⅲ. 외환거래제도의 구조

#### 1. 법규체계

우리나라의 현행 외환거래법규체계는 크게 기본법규체계와 관련법규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환거래 기본법규에는 외국환거래법(1998. 9. 16 제정, 1999. 4. 1 시행)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고시)와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첩,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절차, 각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이 포괄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에 관련되는 대외거래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고시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실제 외국환거래의 세부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특징은 ① 외환거래자유화의 지향 ② 백지형벌식 규제방식 ③ 관계기관 등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유사시 규제수단 강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한다. 즉 원칙규제 예외허용체계(positive system)의 과거 외국환제도를 원칙자유 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여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외환의 지급, 영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다.

또 우리 외국환거래법은 백지형벌식 규제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바, 기술적으로 복잡다기한 외환거래의 특성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국제거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규제대상을 시행령(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고시(관리규정)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장 등 관계기관에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4)</sup> 한편 유사시에 대비한 환율제한, 거래의 비상정지, 외국환집중, 외환가

14)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위임·위탁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변유치의무제, 채권회수의무, 외국환취급기관 등에 대한 제한조치(건전성규제) 등의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사법연수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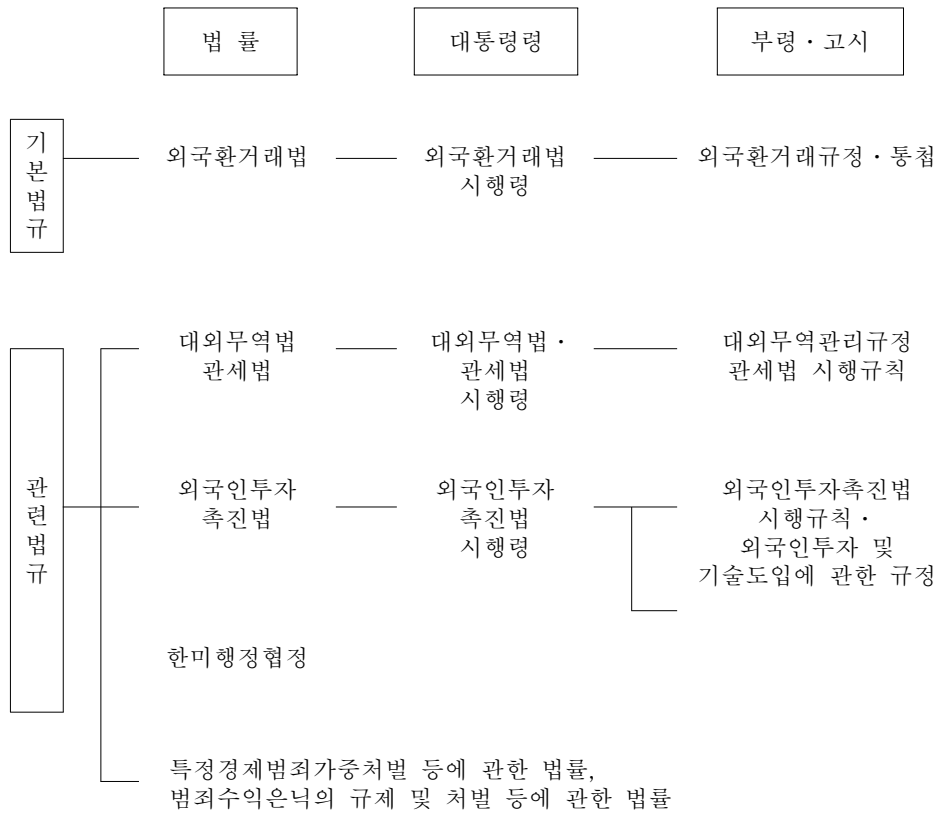
이밖에 외환거래 관련법규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미행정협정, 외환거래범죄에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대외무역법은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를 규정해주는 법이다. 수출입거래에 따른 외환의 지급·영수는 수출입행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은 대외무역법상 인정된 무역거래에 대해서만 지급·영수를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한미행정협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부산세관 조사국, 2005. 5).

---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림 3-1> 외환거래법규체계



## 2. 관련기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수사기관으로는 검찰 및 경찰, 그리고 관세청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모든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밖의 특별사법경찰로서 관세청 등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권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sup>15)</sup>

관세청은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조사 및 국경간 지급수단의 이동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외국환거래관련 기관으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로 은행) 등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외환정책의 수립·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며 권한 중 일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대외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수리,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독과 업무제한, 업무정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 각 외국환거래취급 은행들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등

1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2호] 제33조 (검사) ②법 제20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0.12.27, 2005.12.28>

3. 관세청장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의 업무를 행한다(부산세관 조사국, 2005. 5).

## IV. 외환범죄의 실태

### 1. 외환거래사범의 개관

불법외환거래사범의 범주에는 순수외환사범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사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자금세탁사범을 포괄할 수 있다.

<표 4-1> 외환거래사범 단속실적(총괄)

(백만원, %)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 성 비	건수	금액	구 성 비
순수외환사범	1,917	3,662,560	1,901 (△1)	3,555,883 (△3)	96	267 (△26)	197,078 (△9)	80
재산국외도피사범	21	18,611	27 (29)	81,625 (339)	2	3 (△57)	45,944 (472)	19
자금세탁사범	5	10,555	15 (200)	60,920 (477)	2	2 (△50)	2,291 (△65)	1
합 계	1,943 (264)	3,691,726 (796,3)	1,943	3,698,428	100	272	245,313	100

주: 1)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외환거래사범을 최근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개관하여 보면 2005년 1월부터-12월까지 외환거래사범 전체 단속실적은 1,943건, 3조 6,984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대비하여 건수와 금액에서 거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중에서 순수외환사범 단속실적은 전년과 비교하여 건수 1%감소, 금액 3% 감소로 역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표 4-2>.

한편 재산국외도피사범은 27건을 적발하여 전년도인 2004년 21건에 비하여 건수기준 29%, 금액기준 339%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환치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자금흐름 및 최종소재에 대한 추적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세탁사범은 2005년도에 15건, 609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5건에 비하여 건수기준 200%, 금액기준 477% 증가하였다. 재산국외도피사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세탁사범의 단속실적 증가세는 정부차원에서 ‘자금세탁 단속강화대책’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조사관의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들어서 2월까지의 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동향을 보면 단속건수 272건, 2,453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7% 감소하고, 금액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은 267건, 1,971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26%, 금액 9%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의 경우 총 5건, 482억원을 적발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55% 감소, 금액 231%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최근 2006년 6월중 불법외환거래사범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영수와 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 등의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등의 검거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타 환치기계좌운영주 등 검거금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5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월 검거한 대형 환치기 조직 사건(8,170억원)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관세청, 2006. 7).

## 2. 외환거래사범의 유형별 현황

외환거래사범 중에서 순수외환사범 단속실적은 2005년에 1,901건, 3조 5,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1%, 금액 3% 감소하였다. 순수외환사범 내에서는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영수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사건이 많이 적발되었고, 이에 반해 채권미회수, 미신고휴대반출입 사건에 대한 적발이 감소하였다<표 4-2>. 이는 대형 불법 환치기 조직(8천억, 1천억 2건 등 200억 이상 17건) 및 경유 등 석유제품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불법 차입사건(2300억 원) 검거에 기인한다.

2006년도에 들어서 2월까지의 순수외환사범 단속실적은 267건, 1,9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6%, 금액 9% 각각 감소하였다. 검거건수에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외화미신고휴대반출사건의 감소하였으며, 금액면에서는 불법상계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영수, 채권미회수 적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1월부터 채권회수 의무기한이 6월에서 1년6월로 연장되었고, 외화휴대반출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출국자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는 경찰의 이첩건이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 순수외환사범 단속실적

(백만원, %)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 성 비	건수	금액	구 성 비
지 급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	4	30,262	2 (△50)	236,786 (682)	7	-	-	-
	기한내 채권 미회수	13	190,532	15 (15)	97,090 (△49)	3	-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929	337,808	971 (5)	403,975 (20)	11	134 (△27)	64,550 (22)	32
	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	732	34,373	590 (△19)	28,064 (△22)	1	87 (△35)	5,144 (△28)	3
	기 타	42	318,249	86 (105)	248,148 (△22)	7	14 (27)	31,360 (115)	16
	소 계	1,720	911,224	1,664 (△3)	1,014,063 (11)	29	235 (△29)	101,054 (△3)	51
영 수	무역가장을 통한 영수	-	-	- (-)	231,273 (-)	7	-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영수	73	87,447	85 (16)	86,035 (△2)	2	11 (△45)	9,079 (△46)	5
	입국시 미신고 휴대반입	27	4,358	27 (0)	2,434 (△44)	-	4 (300)	115 (854)	0
	기 타	9	4,256	27 (200)	44,178 (938)	1	4 (33)	538 △86	0
	소 계	109	96,061	139 (28)	363,920 (279)	10	19 (△21)	9,732 △53	5
상 계	신고의무 미이행 상계	43	962,825	41 (△5)	257,111 (△73)	7	7 (600)	2,904 (△83)	1
기 타		45	1,692,450	57 (27)	1,920,789 (13)	54	6 (0)	83,388 (10)	43
합 계		1,917	3,662,560	1,901 (△1)	3,555,883 (△3)	100	267 (△26)	197,078 (△9)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2005년도 재산국외도피사범을 살펴보면 단속된 총 27건 중 환치기 수법이  
용 15건, 가격조작 수법이용 7건으로 건수기준 환치기 및 가격조작에 의한  
재산도피가 전체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국외도피사범은 금  
년 2006년도에 들어 외국환 허위신고를 이용한 수법이 1건 390억원, 자본거  
래를 이용한 수법이 2건 7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3>.

<표 4-3> 재산국외도피사범 단속실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

(백만원, %)

전제 범률	수 범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성 비	건수	금액	구성 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환 치 기	11	2,638	15 (36)	8,995 (241)	11	-	-	-
	제3자 지급/영수	-	-	2 (-)	268 (-)	-	-	-	-
	가격조작	-	-	7 (-)	19,405 (-)	24	-	-	-
	외국환 허위신고	2	2,678	1 (△50)	1,583 (△41)	2	1	38,972	85
	자본거래	3	2,399	-	956 (△60)	1	2	6,972	15
	수출채권 미회수	1	656	-	-	-	-	-	-
	기 타	4	10,240	2 (△50)	50,418 (392)	62	-	-	-
합	계	21	18,611	27 (29)	81,625 (339)	100	3 (△57)	45,944 (472)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2005년도에 나타난 자금세탁사범은 총 15건 단속에 금액기준 609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표 4-4>. 자금세탁사범의 주요 수법은 가격조작 5건, 환치기 3건, 제3자지급 2건, 차명계좌이용 2건 등 대부분 가격조작과 환치기 수법에 의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2월까지 적발된 자금세탁 2건은 수입대금 과다송금 및 허위수출대금영수에 의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lt;표 4-4&gt; 자금세탁사범 단속실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백만원, %)

전제 법률	수 범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 성 비	건수	금액	구 성 비
관세법	국내금융 거래이용	-	-	2	3,680	6	-	-	
	외국환 거래이용	-	-	3	4,991	8	-	-	
	자산취득 이용	-	-	2	726	1	-	-	
	기 타	-	-	1	10,141	17	-	-	
특경법	외국환 거래이용	4	10,519	4 (0)	35,358 (236)	58	2 (100)	2,291 (155)	100
	비금융 기관이용	-	-	1	1,314	3	-	-	
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이용	1	36	1 (0)	2,799 (7,584)	5	-	-	
	기 타	-	-	1	1,911	2	-	-	
합 계		5	10,555	15 (200)	60,920 (477)	100	2 (△50)	2,291 (△65)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자금세탁 적발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들어 돈세탁을 하려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거나 검찰에 기소당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바, 2006년 6월 6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발표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5개월 동안 자금세탁 혐의로 발견된 건수가 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11월 FIU가 출범한 뒤 4년 동안 기소·고발된 건수(444건)를 감안할 때 폭발적인 증가세다. 집행기관별로 살펴보면 주금 가장 납입이나 횡령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된 건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세청이 범칙금을 물리거나 형사고발한 건수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래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의 원화 거래가 전체의 절반(48%)에 달했으며 1억원에서 5억원 사이가 38%를 차지했다.

그동안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만8,793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061건의 정보를 검찰·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돼 기소·고발·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785건으로 전체 수사·조사 종결사건 1,558건의 50.4%에 달했다.

자금세탁 혐의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금융기관들의 혐의거래 신고대상이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많아진데다 온라인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FIU에 신고한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8,635건으로 전년 동기(3,524건)보다 2.5배나 늘어났다. 올 들어 혐의거래 접수건수는 월평균 1,700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3만건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해외 반출입이 쉬워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비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서울경제, 2006. 6. 6)

<표 4-5> 대상국별 불법외환거래사범

(백만원, %)

구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일본	312	781,924	328 (5)	1,616,361 (107)	44	55 (6)	76,558 (509)	31
미국	339	692,431	315 (△7)	963,140 (39)	26	40 (△51)	7,231 (△77)	3
중국	942	677,731	1,007 (7)	703,799 (4)	19	132 (△27)	107,637 (12)	44
홍콩	27	3,802	36 (33)	174,403 (4,488)	5	8 (60)	36,378 (1,536)	14
베트남	30	174,334	29 (△3)	64,252 (△63)	2	7 (250)	1,325 (△85)	1
태국	26	4,144	32 (23)	56,860 (1,272)	2	3 (△57)	2,165 (△95)	1
호주	33	458,027	14 (△58)	11,166 (△98)	-	-	-	-
코스타리카	-	-	2 (-)	11,098 (-)	-	-	-	-
스리랑카	-	294	-	10,056 (3,318)	-	-	-	-
기타	234	899,039	180 (△23)	87,293 (△90)	2	27	14,019	6
합계	1,943	3,691,726	1,943	3,698,428	100	272	245,313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2005년도 불법외환거래사범을 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환치기 13,596억원, 불법상계 2,066억원, 휴대반출입 170억원, 총 16,164억원을 적발하여 전년대비 건수 5%, 금액 107%가 증가하였다. 미국은 무역가장 4,681억원, 환치기 1,491억원, 자본거래 1,220억원 등을 적발, 전년대비 건수 7% 감소, 금액 39%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환치기 4,439억원,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영수 564억원, 제3자 지급영수 473억원 등을 적발, 전년대비 건수 7%, 금액 4% 증가하였다. 홍콩은 제3자 지급영수 1,206억원, 재산도피 208억원, 자금세탁 200억원 적발, 전년대비 건수 33%, 금액은 4,488%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도 2월까지 적발된 외환거래사범은 중국의 경우 환치기 506억원, 외국환허위신고를 이용한 재산도피 390억원, 제3자 지급영수 8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영수 63억원 등 대상국 중 가장 규모가 큰 총 1,076억원을 적발, 전년 동기대비 건수 27% 감소, 금액은 12% 증가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687억원대 환치기계좌운영사건을 비롯하여 환치기 712억원,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영수 23억원을 적발, 전년동기대비 건수 6%, 금액 509% 증가하였고, 홍콩은 당월 검거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나, 전월 자본거래 340억원, 자금세탁 외국환거래이용 23억원 등을 적발, 전년동기대비 건수 60%, 금액 1,536%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은 40건, 72억원을 검거하였으나, 전년도 채권미회수 등 163억원 사건 적발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51%, 금액 77% 각각 감소하였다.

2005년도 불법외환거래사범의 단속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세관은 526건, 9,252억원을 적발, 전년대비 건수는 15% 증가, 금액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이는 전년 2004년에 해운회사의 불법상계 등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사건 검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금년 단속 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463건, 15,905억원 적발, 전년대비 건수는 2% 감소, 금액 89%

증가하였는 바, 한국과 일본간 8천억원 상당의 대형 환치기 사건 검거로 인하여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천세관은 208건, 4,039억원을 적발하여, 전년대비 건수 20%, 금액 12% 증가였고, 인천공항세관은 676건, 2,699억원을 적발, 전년대비 건수 14% 감소, 금액 69% 증가하였다. 대구세관은 19건, 26억원을 적발, 전년대비 건수 36%가 증가하고, 금액은 86% 감소하였다. 한편 광주세관은 51건, 5,063억원을 적발하였는바, 이는 2005년 10월중 무역을 가장한 불법차입 및 지급건 4,600억원 상당을 검거함으로써 나타난 실적이며, 이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단속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lt;표 4-6&gt; 지역별 불법외환거래사범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액
서 울	458	2,305,990	526	925,223	25	15	△60
부 산	474	840,927	463	1,590,467	43	△2	89
인 천	173	361,353	208	403,943	11	20	12
인천공항	783	159,254	676	269,922	7	△14	69
대 구	14	18,644	19	2,569	-	36	△86
광 주	41	5,558	51	506,304	14	24	9,009
합 계	1,943	3,691,726	1,943	3,698,428	100	0	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자료: 관세청(<http://www.customs.go.kr>)

2006년도 2월까지 적발된 지역별 실적은 서울세관의 경우 60건, 1,368억원을 적발, 전년 동기대비 건수 42% 감소, 금액 43% 증가하였다. 이는 환치기 및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사건 검거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687억원 상당의 환치기운영주를 검거함으로써 43%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산세관은 64건, 457억원 적발, 전년 동기대비 건수 4%, 금액 20% 각각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424억원 상당의 환치기계좌운영사건을 검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천세관은 53건, 515억원 적발, 전년동기대비 건수 13% 증가, 금액 22% 감소하였다. 이는 390억원 상당의 재산도피 검거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검거금액이 3억원미만의 소액사건들로 검거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검거금액은 감소한데 기인한다. 인천공항세관은 84건, 64억원 적발, 전년동기대비 건수 41%, 금액 45% 각각 감소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외화신고에 대한 홍보 및 미신고휴대반출사건에 대한 평가등급 하향조정, 경찰의 이첩건 감소 등으로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세관은 4건, 37억원을 적발, 전년 동기대비 건수 20% 감소, 금액 402% 증가하였고 광주세관은 7건, 12억원을 적발, 전년 동기대비 건수 40%, 금액 2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외환거래사범의 검거 및 수사사례분석

#### 1) 주요 검거사례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등으로 외환규제가 완화된 것을 이용하여 일부 부유층의 외화 밀반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경찰청에서는 국제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색 및 환치기 사범에 대한 수사 강화로 2004년도에 264건, 829명의 외화 밀반출 사범을 적발하였다. 경찰청의 적발 금액은 약 7,963억여원에 달하였으며 또한 적발된 829명 중에 19명 구속, 798명을 불구속 조치하였다.

경찰청의 2004년도 주요 검거사례로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환치기 사범검거 사례를 들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04년 9월 20일 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국내 중소 무역업체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중국동포 등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4,000여회에 걸쳐 인터넷·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120억여원을 불법 송금해주고 2억 4천여만원의 수수료(2%)를 받은 중국동포 등 107명을 검거하였다(경찰청, 2005).

한편 2005년도 이후 관세청을 통한 주요 검거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 <2005년 주요 검거사례>

-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과 중국간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송금대행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3. 1 - 2004. 11월까지 7,463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할 수입물품대금 송금을 대행하는 등 268억원 상당의 외국환업무취급자 검거(인천세관)

- 국내에서 라면, 커피 등 각종 식품류를 중국 연태에 수출하고, 다른 사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영수하거나 국내거

주 조선족이 송금할 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영수하는 등 2003.12-2004.5 월까지 392회에 걸쳐 95억원을 국내 환치기계좌에 영수한 외국환업무취급자를 검거(부산세관)

<2006년 1-2월간 주요 검거사례>

○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엔화를 받아 처, 처남 및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휴대반입한 후, 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본에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이 지정한 국내거주자들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5.4-2006.2월까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686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업무를 대행한 자 검거(서울세관)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는 양 서울 명동소재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현지법인에 통지한 후,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중국 교통은행에서 72만불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을 중국에서 임의 처분토록하고, 변제기에 결제 요청받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대지급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2003. 3월 - 2005. 4월까지 390억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중국으로 도피시킨 자 검거(인천세관)

2) 수사사례분석

① 경찰청

【필리핀으로 약 527억원의 외화를 유출한 환전상·무역업자 등 환치기사범 51명 적발(구속 1, 불구속 48, 수배 2), 경찰청 보도자료 2004. 9. 16】

● 개 요

경찰청(외사3과)은 2002. 4월 ~ 2003. 11월 필리핀 소재 H호텔 내에 'H 금융'을 차려놓고 국내에 제3자 명의의 계좌 11개를 개설하여 필리핀 여행자나 무역업자들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필리핀 현지에서 폐소貨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4,125회에 걸쳐 약 144억원을 환전하여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등 51명을 적발하였다.

대부분 무역이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H 금융', 'S 금융', 'O 금융' 등 필리핀에 거주하는 아국인 환전상을 통해 1년 8개월에 걸쳐 527억원 (약 4천 4백만 달러)를 '환(換)치기'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내 용

경찰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 이○○외 환전상들 중,

이○○ (수배 중)는 필리핀 마닐라市의 한인 밀집지역인 마카티 지역에 'S 금융'을 차려놓고 5개의 은행계좌를 이용, 3,228회에 걸쳐 약 205억원을 환전하여 주고 약 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피의자 강○○ (수배 중)는 마카티 지역에 'O 금융'을 개설, 처 명의의 계좌 등 3개의 은행계좌를 이용, 2,015회에 걸쳐 약 95억원을 환전하고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피의자 최○○ 는 필리핀 P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 도박꾼들에게 약 3억원의 도박자금을 '환(換)치기'하여 주고 약 1천5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환전상들을 통해 불법 환전한 피의자들 가운데,

피의자 김○○ 는 환전 수수료 절감과 부가세 탈세를 위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컴퓨터 대금 약 8억5천만원을 131회에 걸쳐 불법 환전,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의자 정○○ 등 여행업 종사자 10명은 'D 여행사' 등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 절감과 송금시간 단축을 위해 여행객들의 경비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 여행사로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조○○ 등도 자녀 유학자금 또는 필리핀 거주자와의 채권, 회사 운영자금, 건설공사 대금 등 여러 이유로 자금 추적이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환(換)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

경찰은 2004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으로 총 285건에 485명을 입건, 1,769억원의 외화유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외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들어 다 원화 환율의 변동성도 작아지자 해외 투자 또는 부동산 구입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國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자 모두를 엄정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② 관세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4,300억원 상당의 사상 최대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 관세청 보도자료 2004. 5. 31】

● 개 요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4년 5월 28일 47,000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 계좌로 4,3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1

명을 재산국외도피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호주 교민 조모씨 외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 ● 내 용

주범 조모씨(만 50세) 등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환치기계좌 총 51개를 개설하여 19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9,872회에 걸쳐 건당 5-20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자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박모씨(만49세)는 상기 환치기 계좌를 운용하여 얻은 수수료 4억원 상당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 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

관세청은 그 동안 상기 환치기계좌에 무역대금 등을 송금한 이모씨 외 5명은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한국·호주·베트남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출금한 47,000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대형 환치기계좌 운용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③ 수사사례의 함의

최근 세계경제는 국가간 무역자유화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자본자유화 등으로 교역 및 금융거래관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외환범죄 검거 및 수사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외환자유화 추세에 편승하여 시민과 업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행위자들이 불법적인 외환거래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불법외환범죄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또한 국내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으

로 수출입업자, 선박회사, 물류운송업자 등 관련 종사자에까지 정보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탈법방지와 수사협조를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업계내의 상거래 증가 외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문화·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해외유학을 계획하거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해외로 이민하려는 내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외환 사기범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해외 이주공사 등 이민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외교부, 법무부 등 출입국 및 이주관련 기관과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외환범죄의 전망과 대책

### 1. 외환범죄의 전망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 계획에 의해 2006년 들어 외환거래 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또 2006년 6월에는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선진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구상에 따라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2009년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외환거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자본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환투기 가능성이나 시장불안 요소, 탈법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단속실적 추세를 보면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및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사범이 향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속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외환사범 단속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범죄수법 측면에서 ○ 무역회사대표(총책)·환전상(불법환전 담당)·보따리무역상 대표(일명 공두, 세관신고 면제금액인 1만불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할 운반책 모집담당) 등이 긴 신종환치기 사례, ○ 은행직원 출신의 환전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명의로 허위실명 확인을 받은 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국외송금을 주도한 사례, ○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재산을 도

피한 사례 등 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관세청 보도자료, 2005. 6. 22).

외환거래 자유화의 확대와 범죄수법 측면에서 보이는 지능화 추세를 볼 때 전통적인 외환범죄 수법인 환치기, 은행에 의하지 않은 불법송금, 무역가장, 미신고 반출입을 이용한 외환범죄 외에도 해외투자 빙자,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역외펀드 설립 등 새로운 수법에 의한 외환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사법연수원, 2005). 즉 투자수익금 반입실적이 거의 없는 해외투자, 해외대출(본사보증)과 비자금 구조를 운영하는 조세회피지역 페이퍼 컴퍼니, 외국자본을 가장하여 국내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는 역외펀드의 활동 등 더욱 지능화된 외환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2. 외환범죄의 대책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연구시각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외환범죄의 대책 구상도 상당 효율적인 제도의 고안(institutional design)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외환범죄 대책안의 큰 틀은 필자의 선행연구<sup>16)</sup>인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IMCRS: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에 따라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델에서 필자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범죄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과정은 문제 발생과 쟁점의 확인,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 그리고 환류에 의한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6) 정웅,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

본 연구에서는 IMCRS에 따른 외환범죄 대응방안의 내용으로 제도 설계 단계 특히 조직화 측면에서 전문수사부서 확보, 제도 집행 단계에서 범죄대응절차로서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문수사부서의 설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교역 및 금융거래관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외환거래 자유화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자본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동시에 환투기 가능성이나 탈법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사범과 복잡한 외환제도를 악용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사범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범죄에 대응하여 전문수사조직을 설치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담부서에서 기존의 순수외환범죄와 함께 재산국외도피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원산산지규정위반 범죄와 지적재산권침해 범죄 등 불법무역범죄까지를 전담하는 국제금융경제범죄 수사부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수사요원들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금융경제관련 기초이론과 법제도의 이해, 국제금융경제정보의 수집 및 분석, 수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해당 부서의 전문수사요원들이 불법외환거래 즉 무역가장, 채권 미회수, 환치기, 은행에 의하지 않은 거래, 제3자 지급영수, 미신고 반출입,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정 위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내범죄수사 차원과는 다른 국제적 공조수사 및 금융계좌추적 수사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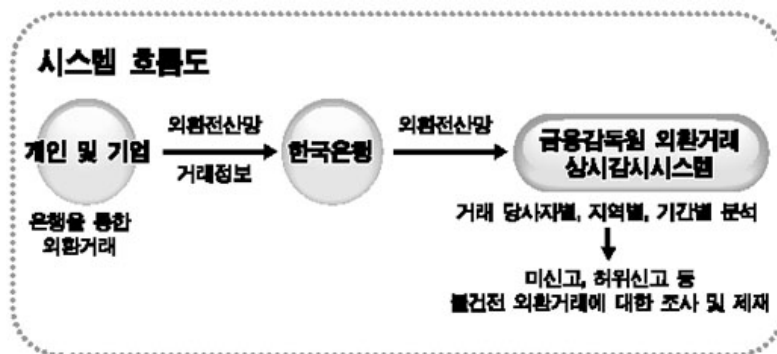
경찰청은 마약과 테러를 위한 범죄자금 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및 불법 휴대반출입, 자금세탁 등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범법행위로 상존할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밀수·상표법 위반 등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통하여 외환사범을 포괄한 국제범죄 감시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제경제 및 외환범죄양상 변화에 사전 대비하여 경찰청은 한정된 조직과 인력 하에 외환범죄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바 여기에는 관세청이 활용하는 통화내역 연결분석, 계좌간 연계분석 등(관세청 보도자료, 2005. 6. 22) 미시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을 포괄한 거시적 측면에서 감시단속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외환범죄 감시단속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그 제도적 안착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19일 100만불 이내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환전산망 정비 및 산출 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거시경제 및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은 2005년 11월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연합뉴스, 2006. 6. 8). 또 이 시스템은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비정상거래를 찾아내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는 만큼,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그림 5-1>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그러나 경찰청은 필요할 경우 감시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빈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큰 개인과 기업들을 추출해 분산거래를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17) 종전에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은행을 통해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료작성 등 업무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에게 불편을 끼쳐왔으나 이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시스템의 활용을 제도화할 경우 경찰청은 한국은행 외환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나 거액거래 등 테마별로 외환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혐의분석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에서는 경찰청과 유관기관, 민간기업·시민 중 경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세 행위자 모두 범죄대응에서 현실적 이해당사자이며 특히 정부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시민의 참여·협조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에 가장 핵심적 성패 요인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조가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은 범죄대응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지향하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해당사자간 강력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형성에 의한 상호 협력(collaboration)과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먼저 불법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 여건 혹은 취업 등으로 해외로 이민하려는 내국인과 그에 따른 이민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찰청에서는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외교부, 법무부 등 출입국 및 이주관련 기관과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유관기관과 외환범죄 감시단속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제도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정보교류·수사자료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

화하는 한편으로 금융, 물류, 이민서비스 등 관련 업체와 시민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참여·협조를 통해 정보입수 범위를 확대하고 탈법방지과 수사협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가 시민들의 외국환 불법행위를 방지·단속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외국환취급 상업은행(commercial bank)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IV. 결 론

우리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 들어서는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를 겨냥하여 또 다시 단계적 자본자유화 추진을 계획하였다. 더 나아가 2006년에 정부는 당초 2011년으로 되어 있던 자유화일정을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financial hub) 육성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hub & spokes) 구축이 보장되고는 있으나,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에 수반하여 여러 탈법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진현황과 자본자유화 수준, 자본자유화에 수반된 외환거래에서의 탈법위험을 살펴보고, 현행 외환제도의 구조와 외환범죄의 유형을 개관해 본 후 외환범죄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외환거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자본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환투기 가능성이나 시장불안 요소, 탈법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단속실적 추세를 보면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및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사범이 향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환범죄 대책을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IMCRS)에 따라 모색하였는 바, 그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도 설계 단계 특히 조직화 측면에서 전문수사부서 확보, 제도 집행 단계에서 범죄대응절차로서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외환범죄 분석 및 대응방안 구상을 계기로 향후 FTA 시대, 자본자유화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국제범죄, 경제범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_\_\_\_\_(2006), 『경찰백서』.
- 관세청(2006. 1),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_\_\_\_\_(2006. 3),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_\_\_\_\_(2006. 7), 『2006년 6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국민경제자문회의(2005. 6. 3),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남종현, 설동규(1996), 『APEC지역에서의 자본이동성 변화와 한국경제』, 한국금융연구원.
- 박기륜(2004),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 부산세관 조사국(2005. 5), 『외국환거래제도 홍보자료』,
- 사법연수원(2005), 『경제범죄론』.
- 오정근(1997. 7), 『資本自由化와 國際收支-동아시아의 經驗-』, 한국은행.
- 이종덕·박경훈(2005. 12),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 『외환국제금융 리뷰』, 한국은행.
- 정 웅(2005), 『남북교역의 법적 환경과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19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_\_\_\_\_(2006),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재정경제부(2006. 5. 19),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Obstfeld, M.,(1993),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the 1990s”, *NBER Working Paper No. 4534*, NBER.
- OECD(2004),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http://www.police.go.kr>(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fss.or.kr>(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Abstract

### A Study on Foreign Exchange Crime and Countermeasure in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For the Secure Establishment of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Chung, Woong Ph. D.  
Police Science Institute

In the wake of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Korea has been of late faced with a high risk of illegal foreign exchange. Especially the new trend of foreign exchange crime including money laundering is expected to be on the increase.

As a scheme for the crime response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groped for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foreign exchange crime.

In sum, on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 this study offers some suggestions which comprise the securing of specialized bureau and manpower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building of advanced crime monitor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network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Key Words:** foreign exchange crime,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

<부 록>

1. 주요 단속유형별 적발사례<sup>1)</sup>

1) 수출채권미회수

○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해지거나, 현지법인지원·재산도피 등의 목적으로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7조】

- 건당 미회수 잔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02.7.2 회수대상채권기준 완화 : 건당 5만불 → 10만불

-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2006년 6월 외환자유화 조치 이전인 2005년 말까지의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환거래법 기준으로 정리된 것임. 『외국환거래제도 홍보자료』, 부산세관 조사국, 2005. 5.

○ 적발사례

[사례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및 채무변제 목적으로 물품수출 후 수출대금을 허가 없이 기한 내에 미회수한 경우.

[사례2] 처음에는 정상적인 수출거래를 하였으나, 추후 해외수입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허가 없이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사례3] 국내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지 않고 이를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수입한 물품의 처분대금을 제3국 등에 부동산·증권·예금 등의 형태로 도피시킨 후 고의부도를 내도록 한 경우.

[사례4] 해외현지법인 장부에 본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계상한뒤, 국내본사가 현지법인으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 경우.

## 2) 무역가장

○ 허위의 계약서, 선적서류 등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무역거래를 만들어낸 후, 이를 자금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5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재정부장관 허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채무보증 등
- 재정부장관 신고 : 해외직접투자 등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적발사례

[사례1] 국내 본사의 유동성확보 및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수익제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조성한 자금을 중계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허가 없이 국내 본사로 유입시킨 경우.

[사례2]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홍콩에서 조성한 자금을

중계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허가 없이 국내 본사로 유입한 경우.

[사례3]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의사 없이 선대신용장(Red Clause L/C)을 개설케 하여 선대금을 지급받고,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반입한 경우.

[사례4] 對중국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계좌간 차액을 정산할 목적으로, 중국소재 情婦 명의의 회사로부터 양파, 당근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송금한 경우.

[사례5] 밀수입한 보석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의 수입거래를 통해 밀수대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 3) 불법상계

○ 수출입거래 당사자 간에 기존의 채권, 채무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는 것을 말하지만,

- 현지법인지원이나 재산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상계를 이용하는 경우, 채권·채무를 허위로 계상한 후, 이를 상계하는 경우 등이 해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적발사례

[사례1] 해외현지법인의 누적된 적자를 보전해줄 목적으로, 현지법인 장부에 국내 본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계상토록 한 뒤, 본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신고 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2] 국내선박회사가 해외선박회사와 선복(船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선복임대차를 하면서 발생한

선복용선료 관련 채권·채무를 신고 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3] 원양어업을 하면서 러시아 합작회사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대금과 합작사 소속선박의 국내경비 대리지급부분을 신고 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4] 국내회사가 독일 항공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엔진정비비용, 부품대금 등의 채권과 국내회사가 동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인 엔진정비비용 등을 신고 없이 상계한 경우.

[사례5] 방글라데시의 해외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의류완제품을 미국 구매자에게 현지인도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미국 구매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 지급하지 않고 원재료 공급대금과 상계한 경우.

#### 4) 환치기

○ 환치기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해외 송금목적인에게 송금하는 방법. 즉,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임.

- 밀수대금의 지급·영수, 저가신고 차액대금, 재산국외도피 등의 지급 수단으로 이용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

-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제3호)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제4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적발사례

[사례1]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중국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국내은행계좌에 신고 없이 수입대금을 입금한 경우.

[사례2] 중국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자가 동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중국의 다른 회사에게 각종 화장품을 수출한 회사의 국내은행계좌에 신고 없이 입금한 경우.

[사례3]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회사직원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경우.

[사례4]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미신고 차액은 환치기계좌를 통해 지급한 경우.

### 5)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 정확히 표현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라고 해야 하지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외국환은행이고 국내 시중은행은 모두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은행으로 표현한 것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거래규정 5-11조】**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화의 지급 등을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외의 방법이라 함은 휴대수출입이나 일반수출입을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수출입’을 말함

\* 환치기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한 방법임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건당 미화 1천불 초과외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적발사례

[사례1] 일본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1천불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을 자신이 출국시 직접 휴대하여 가지고 나가 지급한 경우.

[사례2] 일본 회사로부터 각종 전자제품을 수입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에 출국하면서 가지고 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사례3] 대만 회사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의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주고, 일부는 국내에 입국한 대만회사 대표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준 경우.

[사례4]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내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의 계좌(일명 환치기계좌)에 입금한 경우.

## 6) 제3자 지급·영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지급수단 수출입’과의 관계

· 제3자 지급·영수는 수출입거래, 자본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거래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지급수단 수출입’ 관련규정은 지급수단이 어떠한 경로·방법을 통해 이동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제3자 지급·영수’ 규정과는 서로 관련이 없음

#### ○ 적발사례

[사례1]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고 A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사례2]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중국 B에게 각종 화장품을 수출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례3] A에게 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은 A사로부터 영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B로부터 영수한 경우.

[사례4] A로부터 각종 모피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차액은 국내은행에 B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 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지급수단을 은행을 통해 지급 등을 하지 않고 휴대하거나 화물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세관 신고	한은총재 허가
거주자	수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초과 · 대외지급수단 · 내국통화 ·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휴대수출	-원화표시 당좌수표, 개인수표 등 기타 내국지급수단, 기타증권 -상기 신고사항의 휴대아닌 일반수출 -귀금속 (대외무역법 절차 안 거친 것)
	수입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초과 · 대외지급수단 · 내국통화 ·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의 휴대수입	-원화표시 당좌수표, 개인수표 등 기타 내국지급수단 -미화 1만불 초과 증권 -상기 신고사항의 휴대 아닌 일반수입 -귀금속(대외무역법 절차 안 거친 것)
비거주자	수출	오른쪽 한국총재 허가사항의 휴대수출→세관 허가 가능	-원화표시 당좌수표, 개인수표 등 기타 내국지급수단, 기타증권 -대외지급수단과 합하여 1만불 초과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귀금속 (대외무역법 절차 안 거친 것) -반입범위를 초과한 반출

○ 기타 신고·허가 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천불 초과외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체재비·유학비·이주비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이 경우 세관신고 면제).

○ 완전자유화된 사항

- 거주자가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 거주자가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증권을 수입하는 경우.

- 거주자가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및 미화 5만불 이하의 전시, 자가수집, 기념용 통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 적발사례

[사례1] 거주자가 해외에서 직접 수출대금으로 영수한 미화 3만불을 세관에 신고 없이 휴대반입 한 경우.

[사례2] 수입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미화 6천불을 한국은행에 신고없이 직접 가지고 출국하려고 한 경우.

[사례3] 물품수입시 실제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휴대반출하여 직접 지급하려고 한 경우.

[사례4] 밀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직접 외화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사례5]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해외로 휴대반출하여 도피시키려고 한 경우.

[사례6] 병원비·사업자금 용도로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고 한 경우.

\* 병원비는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투자자금(사업자금)은 자본거래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영수되어야 함.

※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의 법적용

- 예를 들어, 거주자가 수입물품대금 미화 2만불을 휴대수출하다 출국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할 경우, 여러 가지 법규에 동시 위반됨.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규정 위반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 위반
- 휴대수출을 통해 제3자 지급을 하려고 한 경우, 제3자 지급·영수 위반

- 
- 처벌정도가 다를 때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따라 의율함.

《휴대반출시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절차

○ 신고대상

- \*일반적으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 출국시 : 법무부 출국심사 前에 ‘내·외국환 신고대’에서 신고
- 입국시 :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고 세관검사대에서 신고

○ 신고자료의 활용

-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관세청 업무에 보조자료로 활용

□ 미신고시 처리절차

- 미신고 휴대반출 적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사건처리
- 통상 신병은 불구속 처리하고 미신고 금액은 환부
- 벌금은 추후 납부(통상 범칙금액의 10% 수준)
  - \* 단, 출국후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납제도’ 운영

《위조채권에 의한 사기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필요》

○ 최근 관세청에 적발되고 있는 고액위조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위조채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필요

- 미국 국토안보부 보안청의 확인결과, 미정부는 10만불 이상의 고액권은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액면 10만불 이상의 미국채권은 모두 가짜임

- 여행자수표에 관한 진위여부는 한국외환은행이나 토마스 쿡, 아멕스 한국지사에 확인이 가능함

## 8) 재산국외도피

○ 국내재산이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행위가 해당.

-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등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전제범죄와는 별개의 죄가 성립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미수범도 처벌)

\* 대법원판례

: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에도 인식하지 아니한 계좌에 입금시켰다면, 동 재산을 나중에 국내로 회수하였는지 또는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국외도피의 죄는 성립한다.”

○ 적발사례

[사례1] 수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동 자금중 일부를 미리 설립

해둔 미국 현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미국에 도피하여 은닉시킨 경우.

[사례2] 환치기계좌 운영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 4억원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처리한 뒤, 환치기수법으로 호주로 도피하여 은닉시킨 경우.

[사례3] 국내에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치기나 휴대반출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시킨 후, 중국에 있는 내연의 처 명의로 주택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경우.

[사례4] 환치기와 휴대반출을 통해 회사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후, 호주에 소재하는 회사의 지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9) 자금세탁

○ 범죄수익등<sup>2)</sup>의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

-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sup>3)</sup>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긴 재산 또는 보수를 말하는데

- 이러한 재산 등은 경제범죄의 최종적 유인임과 동시에 재범을 위한 자금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가장·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동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은 중대범죄의 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3조 :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미수·예비·음모
- 제4조 : 범죄수익등의 수수
- 제8조 : 범죄수익등의 몰수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혼화재산.

3) 관세청관련 중대범죄로는 관세법상, 밀수입·관세포탈, 대외무역법상 수출입물품 가격조작, 특가법상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있음.

○ 적발사례

[사례1] 국내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치기를 이용해 해외로 이동시킨 후,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례2]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후, 차명으로 현지증권 취득한 경우.

\*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범죄수익이 해외에 은닉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재산도피와 동시에 자금세탁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sup>4)</sup>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③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④ 외국에 있는 영업소·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는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아래의 2. 비거주자 ③ 내지 ⑥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⑤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출장소·기타 사무소
- ⑥ 국내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⑦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⑧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개월이내에 국내에 6개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

- ①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②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 ③ 외국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 ④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⑥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⑦ 상기 ③ 내지 ⑥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하여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

⑧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⑨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3. 가족의 거주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됨.

## 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시행일 2007.1.1,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안에서 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5.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0.23>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다.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채·지방채·사채·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 나. 주식 및 출자지분
  -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 라. 수익증권 및 이권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 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예금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 나.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 마.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이나 모집
  - 바. 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
  - 사.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아.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의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의 기반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환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의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의 부과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

우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0.23>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등)** ①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

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등)** ①외국환(외화증권을 제외한다)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양도·양수하거나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를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업무상의 확인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규제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

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인가의 취소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2. 업무의 제한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3.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정지 또는 제한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6.10.4>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채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 (지급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삭제 <2000.10.23>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0.10.23>

③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제17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23> [유효기간 2005.12.31]

1. 삭제 <2000.10.23>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3.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삭제 <2000.10.23>

6. 기타 제2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유효기간 2005.12.31]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가 중개하는 파생금융거래
3. 해외직접투자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위탁매매·중개·판매대행하는 거래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거부
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⑥재정경제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

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제5장 보칙

**제19조 (행정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고·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1.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중계·집중·교환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위임·위탁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처리 등)** ①재정경제부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제23조·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6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에 위반하여 지급등 또는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의한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에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 본문의 조치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에 위반한 자
5.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

-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해산, 양도·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허위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및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를 포함한다)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10.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 ②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등을 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4.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동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②제1항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

- 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 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
-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경고 및 허가의 취소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등을 한 자

②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 (몰수·추징)**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귀금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해산, 양도·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4. 제2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또는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자
-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550호,1998.9.1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폐지법률)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부칙 <제6277호,2000.10.23>

-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716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책임연구보고서 2006-06

##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환범죄의 양상과 대책 : 동북아 금융허브의 정착을 위하여

---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